

# 日帝 말기의 高等教育 제도

##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변천사(完)—

金 英 宇  
(公州大 教育學科)

###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변천사

1. 開化期の 高等教育 제도
2. 日帝 초기의 高等教育 제도
3.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上)
4.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下)
5. 日帝 말기의 高等教育 제도

### 1. 京城帝國大學

#### 1) 序

1938년부터 1945년 8월에 이르는 日帝 末期에 있어 京城帝國大學은 制度面에서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즉, 京城帝國大學은 이 기간에 豫科規程을 4회나 개정하면서 주로 學生에게 과하는 學科目을 개정했다가 1943년 5월에는 豫科規程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豫科를 制度面에서 대폭 개편하였다. 日帝는 1941년에 京城帝國大學에 理工學部를 증설하여 理工科 분야의 고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各部의 강좌에 관한 규정도 5차례 개정하고, 부설 기관으로 生藥研究所(1939), 高地요양

연구소(1942), 理科教員養成所(1944), 大陸資源科學研究所(1945) 등을 설치하였다.

京城帝國大學의 各部는 選科生 청강생 제도와 하계 강습회 강습과 등을 계속 운영하였다. 즉, 法文學部는 選科生과 청강생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하계 강습회도 계속 개설하였으며, 醫學部에서도 講習科를 매년 개설하여 단기간(8~10일)의 의학 강습을 실시하였다.

1941년 이후 京城帝國大學은 豫科와 3개 學部, 5개 부설 기관을 포함한 한국 유일의 綜合大學校가 되었다.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을 구성하고 있던 學生과 教員은 대부분 日本人이었기 때문에 京城帝國大學은 관립의 植民地大學의 구실을 수행하는 곳에 불과하였다.<sup>1)</sup>

#### 2) 豫科의 制度的 概要

조선 총독부는 1938년 4월에 豫科規程을 개정하여<sup>2)</sup>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고, 文科와 理科를 甲·乙類로 나누어 文科의 경우 英語를 제 1외국어로 하는 자는 甲類, 獨語를 제 1외국어로 하는 자는 乙類로 편입하고 理科는 甲類가

1)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植民地 教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p.461.

2) 1938년 4월 19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84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3375호(1938.4.19).

獨語, 乙類는 英語를 각각 제 1 외국어로 하는 자를 편입시켰다.

조선 총독부는 1938년 12월에 예과 규정을 개정하여<sup>3)</sup> 文科의 學年別 주당 교수 시간 수를 조정하고, 1942년 9월에도 예과 규정을 개정하여<sup>4)</sup> 전면적으로 예과의 學科目을 개편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43년 5월 7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38호로 京城帝國大學 豫科規程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豫科를 개편하였다.<sup>5)</sup>

#### ① 目的

皇國의 道에 則하여 同 大學 各 學部에 入學 할 자에 대해 정심한 정도로 高等普通教育을 施해 국가 유위의 人物을 鍊成하여 大學教育의 기초를 이루게 함을 目的함.

#### ② 教育方針

1. 國體의 本義에 투철하며 世界에 있어서의 皇國의 使命을 徹득시키 지성 進충으로 國家의 중요한 임무에 奉仕할 人材를 養成한다.

2. 一視同仁의 聖旨를 奉體하여 內鮮一體에 徹저하게 한다.

3. 敬神崇祖의 念을 돈독히 하고, 氣節을 尙하게 하며, 勇氣를 重히 하고, 剛毅果斷하여 고매 奮發의 氣宇에 부한 人物을 養成하도록 한다.

4. 修文練武心身一體의 단련을 중히 하고, 貞實강健의 기풍을 振勵하며 勇기 毅節의 勇정을 기하게 한다.

5. 學行一致의 學風을 진기하고, 사색을 精히 하며, 實效를 늘려 文化創造의 根源力을 기른다.

#### ③ 設置學科

文科와 理科, 各 과를 甲類와 乙類로 구분함.

#### ④ 授業

教授와 修練

#### ⑤ 學期

1 학기(4. 1~8. 20), 2 학기(8. 21~12. 31), 3 학기(1. 1~3. 31)

#### ⑥ 學科目

1. 文科: 道義科, 古典科, 歷史科, 經國科,

哲學科, 自然科, 外國語科, 敎練科, 體練科, 選修科(古典 및 歷史를 中心으로 한 사항 또는 外國語科에서 이수하지 않는 外國語 중 하나를 이수함)

2. 理科: 道義科, 人文科, 數學科, 物理科, 化學科, 博物科, 外國語科, 敎練科, 體練科(外國語는 獨語 및 英語로 함)

#### ⑦ 入學資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中學校 卒業者 또는 中學校 第 4 學年 修了자

2. 中學校 졸업자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3. 高等學校 심상과 修了자

4. 大學豫科 또는 高等學校 高等科 입학 資格 시험 합격자

5. 專門學校 入學資格 檢定 합격자

#### ⑧ 入學 지원자 選拔 方法

人物考査, 學力試驗, 身體檢査의 결과와 입학 전 在學한 학교의 調査書 등을 綜合判定하여 입학자를 選拔함.

#### ⑨ 징계와 退學

豫科部長은 教育上 필요가 있다고 認하는 學生徒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退學을 명한다.

1. 性行不良하여 개선의 希望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學力劣等 또는 신체 허약하여 成業의 希望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正當한 事由 없이 계속 1 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出席이 무상한 자

#### 3) 理工學部 增設

조선 총독부는 昭和 13년(1938) 4월 15일자 勅令 제251호로 '京城帝國大學 學部에 관한 件'을 제정하여 理工學部를 增設하도록 하고, 이를 194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sup>6)</sup> 이러한 規定에 의거하여 朝鮮 總督부는 1941년 3월에 朝鮮

3) 1938년 12월 3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39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3563호(1938.12.3).

4) 1942년 9월 2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20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4680호(1942.9.2).

5) 동 제4876호(1943.5.7).

6)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76호(1938.4.20).

총독부령 제29호로 理工學部 規程을 제정하여 理工學部に 物理學科, 化學科, 土木工學科, 機械工學科, 電氣工學科, 應用化學科, 鑛山冶金學科 등 7개 학과를 두고, 物理學 등 14개 강과를 설치하여 소정의 敎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sup>7)</sup>

京城帝國大學 理工學部の 수업 연한은 3년이나 學生의 재학 허용 기간은 6년 이내로 제한하고, 學科目制와 學年制를 절충하였으며, 필수 과목 3/4 이상 습격하여야 진급되도록 하였다.<sup>8)</sup>

理工學部の 졸업자에게는 理學士(物理學科와 化學科)와 工學士의 학위가 수여되도록 하였다.<sup>9)</sup>

1941년 10월에 발표된 大學 學部 등의 재학 연한 또는 수업 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에 따라 京城帝國大學 理工學部는 1942년 2월에 1942학년도 제1차 學年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 제2차 學年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 이후르는 學年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學年期間의 조정에 따라 理工學部는 1942년 4월(50명)과 10월(44명), 두 차례에 걸쳐 新入生을 입학시켰다.<sup>10)</sup>

#### 4) 附設機關의 設置

京城帝國大學에는 生藥研究所를 비롯하여 高地療養研究所, 大陸資源科學研究所 등의 연구 기관과 理科敎員養成所가 부설되어 있었는데, 이들 부설 기관의 制度的 基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生藥研究所

조선 총독부는 1939년 12월 27일자 勅令 제 890호로 京城帝國大學 官制를 개정하여 부속 生藥研究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sup>11)</sup> 이에 따라 京城帝國大學은 生藥의 科學化, 馴化 栽培 및 育

種 栽培과 天然物 醫藥資源 개발 등의 연구·관리를 극적으로 하는 생약연구소를 開城에 설치하였다. 本 研究所의 설치 당시 경성제대는 醫學部に 설치되어 있던 化學研究 시설과 器具 일체를 本 研究所에 이관시켰다. 한편, 경성제국 대학은 1941년 4월에 生藥研究所 부설 濟州島 試驗場을 신설하였다.<sup>12)</sup>

##### (2) 高地療養研究所

조선 총독부는 1942년 5월 30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825호로 경성제대에 高地療養研究所를 부치하되, 京城帝國大學 附置 고지요양연구소의 위치를 江原道 平康郡 平康面에 두도록 하였다.<sup>13)</sup> 1940년대에 있어 結核疾患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하는 國民死亡 제1의 '國民疾病'이었다. 그 당시 한반도에는 結核을 치료하는 요양소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는 1942년 5월 江原道 平康에 病棟(약 100명 수용)을 짓고 정식으로 京城帝國大學의 총장 직속으로 요양소를 발족시켰다.<sup>14)</sup>

##### (3) 理科敎員養成所

조선 총독부는 1944년 4월에 京城帝國大學 官制를 개정하여<sup>15)</sup> 경성제대에 理科敎員養成所 설치를 규정하고 같은 해 7월에 理科敎員養成所 規程<sup>16)</sup>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京城帝國大學은 폐지되는 京城高等工業學校 부설 이과교원양성소 재학생을 흡수하여 理科敎育養成所를 개설하였다. 中等學校의 수학·물상·지리 과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본 양성소는 3년 과정의 數學科, 物象科, 地理科를 두고, 中學校 졸업자나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였으며, 在學生에게는 학자를 지급하는 대신 2년 간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였다. 연구소에는 研究生制度도 두었다.

7)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1987, p.14.

8) 상계서, p.15.

9) 상계서, p.17.

10) 상동.

11) 동 제3887호(1940.1.9).

12)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 二十年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6, p.39.

13) 조선 총독부 관보 제4599호(1942.5.30).

14) 徐明源, 京城帝國大學의 評價, 華谷徐明源博士回甲紀念 敎育學論輯, 螢雲出版社, 1979, p.32.

15) 1944년 4월 6일자 勅令 제235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5166호(1944.4.27).

16) 1944년 7월 14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72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5232호(1944.7.14).

#### (4) 大陸資源科學研究所

조선 총독부는 1945년 6월 4일자 勅令 제336호로 大陸資源科學研究所 官制를 제정하여<sup>17)</sup> 경성제대에 大陸資源科學研究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선, 만주, 지나 등 大陸 여러 지역에 있어서 천연 자원의 개발에 관하여 科學的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 내지 임무로 하는 본 연구소는 所長, 所員, 助手, 書記 등의 직원을 두되, 소장은 京城帝國大學 교수 중에서 조선 총독이 브하고, 소원은 京城帝國大學의 교수나 조교수 중에서 조선 총독이 보하게 하였다.

#### (5) 選科生·청강생 제도, 夏季講習會, 醫學講習科

경성제대 法文學部는 選科生 제도와 청강생 제도를 두고 하계 강습회도 매년 개설하였으며, 醫學部에서는 醫學講習科를 매년 개설하였다.

法文學部의 선과생 제도는 學科 單位로 선과생을 선발하여 敎育을 실시하고, 성적이 좋으면 學部生과 같이 學士資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청강생 제도는 특정 과목만을 청강·이수하게 한 제도이다. 法文學部는 1938년부터 1941년도까지 매년 선과생과 청강생을 모집하여 소정의 敎育을 실시하였는 바, 입학 자격은 선과생은 19세 이상의 中學校나 高等女學校 졸업자 또는 中等學校의 교원 면허증 소지자로 하고, 청강생은 19세 이상의 男·女로 하였다.<sup>18)</sup>

法文學部는 1939년과 1940년의 여름 방학 기간에 하계 강습회를 개설하여 6일 간에 걸쳐 특정 과목과 분야에 관한 단기 강습을 실시하였다.<sup>19)</sup>

醫學部에서도 1938년부터 매년 醫學講習科를 개설하여 8~10일 간에 걸쳐 醫學의 각 과목과 세균학, 방사선요법학, 調劑學, 醫事法制, 結核外科學 등을 내용으로 한 의학 강습을 실시하였

다.<sup>20)</sup> 특히 1944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설된 의학 강습회에서는 ‘결핵증과 간장 기능’, ‘戰時下의 육아 문제’, ‘공습으로 인한 정신 이상’, ‘발진 티프스병 발진열’, ‘BCGワク진에 의한 결핵의 예방’, ‘위암 및 위궤양의 렌트겐 진단’, ‘朝鮮人の 치아 침식증과 그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한 강습이 실시되었다.<sup>21)</sup>

## 2. 官立專門學校

日帝 末期에 한국에는 京城法專, 京城醫專, 京城高工, 京城高商, 水原高農, 大邱醫專, 平壤醫專 등 既設校 7개교와 京城鎭山專門學校, 釜山高等水産學校, 大邱農林專門學校, 平壤工業專門學校 등 新設學校 4개교 등 모두 11개교의 官立專門學校가 있었다. 이 중 대구와 평양 醫專은 제도 변경 없이 중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되고, 평양공업전문학교는 私立大同工業專門學校가 官立으로 개편된 것이다. 1944년에 신설된 大邱農林專門學校는 農科와 農藝化學科를 두고 50명씩의 學生을 모집하여 소정의 敎育을 실시하였다.<sup>22)</sup>

### 1) 京城法學專門學校

본교는 日帝 末期에 있어 별다른 제도 변경 없이 중전의 규정에 따라 敎育을 실시하였다. 본교는 3년제로 입학 자격은 中學校 졸업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시험 합격자로 하였다.<sup>23)</sup> 本校의 學科目은 수신·日本學·國語·지나어·독어·영어·헌법·行政法·民法·상법·手形法·小切手法·刑法·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및 파산법·형사소송법·국제공법·국제사법·經濟原論·경제정책·재정학·상업·교련·체조·武道

17) 조선 총독부 관보 제5547호(1945.7.1).

18) “선과생 및 청강생 모집 요령”, 조선 총독부 관보 제3284호(1937.12.24).

19)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夏季講習會要項”, 조선 총독부 관보 제3731호(1939.6.29).

20) “醫學講習科生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08호(1938.5.30), 동 제3712호(1939.6.7), 동 제4008호(1940.6.3), 동 제4309호(1941.6.6), 동 제4667호(1942.8.18), 동 제4975호(1943.8.31).

21) 동 제5288호(1944.9.18).

22) “告示”, 조선 총독부 관보 제5346호(1944.11.29).

23) “生徒募集”(京城法學專門學校), 조선 총독부 관보 제3569호(1938.12.10).

등이었다.<sup>24)</sup>

한편, 本校는 1944년에 폐교되었다.<sup>25)</sup>

## 2) 京城醫學專門學校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44년 6월에 이르기까지는 제도 면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 없었다. 다만 1938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京城醫學專門學校 規程이 개정되어<sup>26)</sup> 學科目과 교수 시수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44년 6월 30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62호로 官立醫學專門學校 規程을 새로 제정하였다.<sup>27)</sup> 이에 따라 경성의학전문학교도 제도 면에서 개편되었는 바, 官立醫學專門學校 規程에 의거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제도적 개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醫學에 관한 高等의 教育을 施함을 목적으로 한 本校는 4년제로 수업은 教授와 修鍊으로 되어 있다. 본교에는 本科 이외에 研究生과 選科生 제도를 두어 官立醫學專門學校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醫學에 관하여 특수 사항을 다시 연구하고자 하는 자를 研究生으로 2년 이내 在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官立醫學專門學校의 학과목 중 한 과목 또는 몇 과목을 선택하여 그 課程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를 選科生으로 4년 이내 在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과목은 道義, 人文, 理數, 外國語, 敎練, 體鍊, 기초의학(해부·생리·病理·藥理), 臨床醫學(내과총론·외과총론), 診療各論(내과·외과·산부인과·안과·소아과·정신과·피부비뇨기과·이비인후과·치과), 厚生醫學(국민위생·국민체력·법의·醫事法制), 軍陣醫學, 임상 및 후생 의학 실습 등이다. 한편, 입학 자격은 만 17세 이상의 男子로 中學校 졸업자나 中

學校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와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시험 합격자로 하였다.<sup>28)</sup>

## 3) 京城高等商業學校(京城經濟專門學校)

京城高等商業學校는 1938년부터 1944년 6월에 이르기까지는 제도 면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고 다만 敎科目과 교수 시수를 몇 차례 개정했다가 1944년 6월에 京城經濟專門學校로 개편되었다. 즉, 조선 총독부는 1938년 5월 2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05호로 京城高等商業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개편하고,<sup>29)</sup> 1939년에도 5월 5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74호로 規程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개편하였으며<sup>30)</sup> 1943년에도 6월 28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85호로 規程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개편하였다.<sup>31)</sup>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44년 6월 30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63호로 官立經濟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여<sup>32)</sup> 京城高等商業學校를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경성경제전문학교는 經濟에 관한 高等의 教育을 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3년제 고등교육 기관으로 수업은 교수와 훈련으로 하고, 학과목은 道義, 國語, 理數, 敎練, 體鍊, 經濟(商科經濟·經濟史·經濟地理·경제학·경제통제·동아경제·재정·통계), 經營(경영총론·공장경영·부기 및 회계·원가계산·공업개론·실무실습), 法律, 外國語, 연습, 增課 등이었다.

## 4) 官立工業專門學校

### (1) 官立工業專門學校 制度의 概要

조선 총독부는 1944년 6월 30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60호로 官立工業專門學校 規程을 제

24) 1940년 5월 23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34호로 개정된 京城法學專門學校 規程—조선 총독부 관보 제3999호(1940.5.23).

25)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전개서, p.26.

26)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61호(1938.4.2), 동 제3401호(1938.5.21).

27) 동 제5220호(1944.6.30).

28) “生徒募集”(京城醫學專門學校),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81호(1940.12.28).

29)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01호(1938.5.21).

30) 동 제3684호(1939.5.5).

31) 동 제4920호(1943.6.28).

32) 동 제5220호(1944.6.30).

정하여 1944 년도부터 京城工業專門學校, 京城鑛山專門學校, 平壤工業專門學校 등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다. 官立工業專門學校 規程上에 제시된 官立工業專門學校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33)</sup>

① 目的

工業에 관한 高等의 敎育을 施함.

② 수업 연한

3년

③ 授業

敎授와 修練

④ 學校別 설치 과정과 학과

ㄱ. 京城工業專門學校

本科: 紡織科, 化學工業科, 電氣化學科, 土木科, 건축과, 기계과, 原動機科, 전기과, 전기통신과

ㄴ. 平壤工業專門學校

本科: 기계과, 항공기와, 조선과, 금속공업과

ㄷ. 京城鑛山專門學校

本科: 채광과, 冶金科, 광산기계과

⑤ 研究生

官立工業專門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공업에 관한 특수 사항에 대해 다시 연구하고자 하는 자를 연구생으로 2년 이내 在學하게 함.

⑥ 選科生

官立工業專門學校의 學科目 중 한 과목 또는 몇 과목을 선택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생으로 3년 이내 在學하게 함.

(2) 京城工業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38년 4월 2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69호로 京城高等工業學校 規程을 개정하여<sup>34)</sup> 紡織學科, 應用化學科, 土木工學科, 건축공학과, 鑛山學科, 機械工學科, 電氣工學科를 두되, 應用化學科는 應用化學部, 窯業部, 色染部

로 나누고, 鑛山學科는 採鑛部와 冶金部로 나누도록 하였다. 또한 學科目에 있어서 修身·體操·國語·英語·독일어·수학·物理學 및 實驗 등을 각 과 공통으로 과하고, 學科別로 해당 전공 과목을 과하게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39년 4월에 京城高等工業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鑛山學科를 신설되는 京城鑛山專門學校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鑛山學科가 폐지되었다.<sup>35)</sup>

조선 총독부는 1941년 3월 28일자 勅令 제281호로 조선 총독부 諸學校 官制를 개정하여 京城高等工業學校에 理科敎員養成所를 부치하도록 하였다.<sup>36)</sup> 이에 따라 조선 총독부는 1941년 4월 18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19호로 京城高等工業學校 附置 理科敎員養成所 規程<sup>37)</sup>을 제정하고 理科敎員養成所를 부설하여 中等學校의 物理 또는 化學科 담당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42년 4월 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12호로 理科敎員養成所 規程을 개정하여 數學科를 증치하고 中等學校의 수학 담당 교사도 양성하도록 하였다.<sup>38)</sup> 조선 총독부는 1944년 7월에 京城帝國大學에 理科敎員養成所를 부설하도록 하고, 京城高等工業學校의 이과교원양성소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本 養成所는 1944년 7월에 폐지되고, 在學生은 신설되는 京城帝國大學의 理科敎員養成所로 이관되었다.<sup>39)</sup>

조선 총독부는 1944년 4월 27일자 勅令 제236호로 京城高等工業學校를 京城工業專門學校로 改名하도록 하였다.<sup>40)</sup>

조선 총독부는 1944년 6월에 官立工業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고 1944년도부터 모든 官立工業專門學校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京城工業專門學校도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紡織科, 化學工業科, 전기화학과, 土木科, 건축과, 기계과, 原動機科, 전기과, 전기통신과 등 9개

33) 동 제5220호(1944.6.30).

34) 동 제3361호(1938.4.2).

35) 1939년 4월 28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66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3679호(1939.4.28).

36) 조선 총독부 관보 제4261호(1941.4.9).

37) 동 제4269호(1941.4.18).

38) 동 제4551호(1942.4.1).

39) 金英宇, 韓國中等敎員養成敎育史, 서울: 敎育科學社, 1989, p.60.

40) 조선 총독부 관보 제5166호(1944.4.27).

학과를 두고, 3년 과정으로 工業에 관한 소정의 高等教育을 실시하였다.

### (3) 京城鑛山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39년 4월 28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65호로 京城鑛山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고<sup>41)</sup> 京城高等工業學校의 鑛山學科를 이관시켜 京城鑛山專門學校를 설치하였다. 京城鑛山專門學校는 3년제로 採鑛學科, 冶金學科, 鑛山機械學科 등 3개 학과를 두었으며 학과목 중 修身·日本學·國語·지나어·독일어·영어·수학·物理學·化學·體操·공장건축·鑛業法令·공업관리·공업위생 및 구급술·특별강의 등은 공통으로 하고, 學科別로 소정의 전공 학과목을 과하였다.

本校에 選科生과 研究生 제도도 두고, 1년 과정의 專修科도 두었는 바, 본과와 전수과의 입학 자격은 中學校 졸업자와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시험 합격자 또는 일반 전문학교의 入學에 관해 무시험 검정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였다.<sup>42)</sup>

京城鑛山專門學校는 1944년 6월에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官立工業專門學校 規程에 의거하여 1944학년도부터 채광과, 야금과, 광산기계과를 두어, 3년 과정으로 소정의 教育을 실시하는 한편 研究生 제도(2년 이내)와 選科生 제도(3년 이내)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4) 平壤工業專門學校

1938년 평양에 李鍾萬이 설립한 私立 大同工業專門學校가 1944년 4월에 勅令 제236호에 의하여 官立 平壤工業專門學校로 개편되었다.<sup>43)</sup>

조선 총독부가 1944년 6월에 제정한 官立工業專門學校 規程에 따라 工業에 관한 高等教育

을 실시하는 本校는 3년 과정의 기계과, 항공기과, 造船科, 금속공학과를 두어 소정의 教育을 실시하는 한편 研究生 制度和 選科生 制度도 두어 소정의 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本校의 입학 자격은 中學校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sup>44)</sup>

### (5) 水原農林專門學校

水原高等農林學校는 1938년 이후에도 農學科, 林學科, 수의축산학과를 두고 중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에 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다가 1940년 5월<sup>45)</sup>과 1942년 8월<sup>46)</sup>에 規程을 개정하여 학과목의 일부를 개편하고, 1943년 4월에도 規程을 개정하여 農業土木學科를 증설하였다.<sup>47)</sup>

한편, 水原高等農林學校는 1940년 4월에 부설 農業敎員養成所 學則을 개정하고<sup>48)</sup>, 조선 총독부는 1942년 1월에 농업교원양성소 規程을 개정하여 公立國民學校의 訓導도 入學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9)</sup> 조선 총독부는 1942년 4월 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13호로 水原高等農林學校 附置 地理博物敎員養成所 規程을 제정하여<sup>50)</sup>, 농업교원양성소를 폐지하고 地理博物敎員養成所를 부설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44년 7월에 水原高等農林學校 부치 博物敎員養成所 規程을 제정하여<sup>51)</sup> 地理博物敎員養成所를 博物敎員養成所로 개편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44년 6월에 官立農林專門學校 規程<sup>52)</sup>을 제정하여 水原高等農林學校를 水原農林專門學校로 개편하였다.

본교는 農科, 林科, 수의축산과, 農業土木科

41) 등 제3679호(1939.4.28).

42)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872호(1939.12.15).

“專修科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686호(1939.5.8).

43)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編纂委員會, 전계서, p.6.

44)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5106호(1944.2.14).

45) 1940년 5월 8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21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3986호(1940.5.8).

46) 1942년 8월 27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14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4675호(1942.8.27).

47) 1943년 4월 26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23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4867호(1943.4.26).

48) 水原高等農林學校,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1940, p.37.

49) 1942년 1월 24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8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4496호(1942.1.24).

50) 조선 총독부 관보 제4551호(1942.4.1).

51) 1944년 7월 14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73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5232호(1944.7.14).

52) 1944년 6월 30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61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5220호(1944.6.30).

를 두고 3년 과정으로 농업에 관한 고등교육을 계속 실시하였다.

#### (6) 釜山水產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41년 3월에 조선 총독부 諸學校 官制<sup>53)</sup>를 개정하여 釜山高等水產學校를 설치하고 같은 해 4월에 釜山高等水產學校 規程<sup>54)</sup>을 제정하였다. 水産에 관한 고등의 학술 기예를 교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교는 4년 과정의 漁撈學科, 製造學科, 養殖學科를 두어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입학 자격은 다른 官立專門學校와 동일하였다.<sup>55)</sup>

조선 총독부는 1944년 9월에 官立水產專門學校 規程을 제정하여 釜山高等水產學校를 釜山水產專門學校로 개편하였다.<sup>56)</sup> 본교는 4년 과정의 어르과, 제조과, 어업증식과 및 1년 6개월 과정의 遠洋漁業科를 두고, 水産에 관한 고등교육을 계속 실시하였다. 본교에는 研究生과 選科生 제도도 두었다.

조선 총독부는 1945년 3월에 官立水產專門學校 規程을 개정하여 釜山水產專門學校 遠洋漁業科의 수업 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sup>57)</sup> 또한 조선 총독부는 1945년 4월부터 釜山水產專門學校의 수업 연한을 단축시켜 어르과, 제조과, 어업증식과는 3년, 원양어업과는 3년 6개월로 하도록 하였다.<sup>58)</sup>

### 3. 公立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44년 4월에 公立專門學校로 光州醫學專門學校와 咸興醫學專門學校를 설립하여 醫學에 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조선 총독부는 1944년 4월 20일자 조선 총

독부 告示 제617호로 專門學校令에 의거하여 1944년 3월 31일자로 光州公立醫學專門學校의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해 5월 1일에 開校하도록 하였다.<sup>59)</sup> 또한 조선 총독부는 1944년 4월 20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618호로 咸興公立醫學專門學校의 設立을 인가하고(3월 31일자), 같은 해 5월 1일에 開校하도록 하였는 바, 兩公立醫學專門學校의 수업 연한은 4년이였다.<sup>60)</sup> 한편, 公立醫學專門學校의 입학 자격은 신체 건강하고 지조 공고한 男子로서 中學校 졸업자, 專門學校 입학 검정 시험 合格者, 中學校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中學校 4학년을 수료한 자 등으로 하였다.<sup>61)</sup>

### 4. 私立專門學校

日帝 末期에 한국에는 私立專門學校로 普專, 延專, 세브란스醫專, 梨專, 京城藥專 등 5개의 기설교와 惠化, 明倫, 京城女醫專, 大同工專, 淑明女專 등 5개의 新設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이 중 惠化와 明倫은 이 시기에 각종 학교에서 전문학교로 개편된 학교이다.

#### 1) 普成專門學校

본교는 法科와 商科를 두고 중전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敎育을 계속 실시하다가 1942년 3월에 學則을 개정하여 각 學科의 敎科目을 개편하였다.<sup>62)</sup>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44년 5월 16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784호로 普成專門學校를 京城拓殖專門學校로 개편하도록 하였다.<sup>63)</sup> 이에 따라

53) 1941년 3월 28일자 勅令 제281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4261호(1941.4.9).

54) 1941년 4월 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97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4255호(1941.4.1).

55)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4220호(1941.2.18).

56) 1944년 9월 2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316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5275호(1944.9.2).

57) 1945년 3월 3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69호—조선 총독부 관보 1945년 3월 31일자 호외.

58) 1945년 3월 3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70호, “官立水產專門學校의 修業年限 임시 단축에 關한 件”—1945년 3월 31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호외.

59) 조선 총독부 관보 제5161호(1944.4.20).

60) 상동

61)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5155호(1944.4.13).

62) 고려대학교 70년지편찬실, 高麗大學校 70年誌, 고려대학교, 1975, pp.186~188.

63) “告示”, 조선 총독부 관보 제5180호(1944.5.15).

보성전문학교는 1944년 5월에 京城拓殖專門學校로 개편되고, 학과도 法科는 拓殖科로, 商科는 經濟科로 개편되었는 바, 특히 拓殖科에서는 農學 중심으로 敎育을 실시하였다.<sup>64)</sup>

### 2) 延禧專門學校

연전은 1940년 초까지 중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을 계속 실시하다가 1940년 3월에 학칙을 개정하여 ‘數物科’를 ‘理科’로 개정하였다.<sup>65)</sup> 이때 연전에는 文科, 神學科, 商科, 理科 등의 학과를 두고 수업 연한은 文科와 신학과는 4년, 商科와 理科는 3년이었다. 延禧는 1942년에 學則을 개정하여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고<sup>66)</sup> 學科를 文科, 理工科, 商科로 하였던 바, 특히 理工科는 數學·物理學·應用化學·建築工學 등의 전공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sup>67)</sup>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44년 5월 16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785호로 延禧를 京城工業經營專門學校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희전문학교는 1944년 5월에 3년제의 京城工業經營專門學校로 개편되었다.<sup>68)</sup>

### 3) 세브란스 聯合醫學專門學校

1940년에 개정된 세브란스의전의 學則에 의하면, 本校는 4년제, 學生定員은 240명(각 학년 60명),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의 男子로 高等普通學校나 中學校 졸업자로 하였다. 本校의 規則이나 命命 위반자 또는 풍기 문란자에게 근신·정학 등의 징계를 하고, 性行不良者·學力劣等者·1년 이상 결석한 자를 퇴학하도록 하

였으며, 학기 시험·학년 시험·졸업 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본교에 本科 졸업생을 위한 硏究科를 두되, 정원은 각 학과목에 3인 이내로 하고 수업 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 본교는 外國人도 入學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9)</sup>

한편,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는 日帝의 校名 개명 압력에 따라 1942년에 校名을 ‘아시히(旭)醫學專門學校’로 바꾸었다.<sup>70)</sup>

### 4) 梨花女子專門學校

梨專은 1940년에 學則을 개정하여 같은 해 4월부터 3년제의 保育科를 신설하고, 1년 과정의 家事專修科도 신설하였다.<sup>71)</sup>

梨花女子專門學校는 1943년 4월에 文科를 日文科로 바꾸었다가 같은 해 12월에 女子青年鍊成所 指導者養成科로 개편하였는 바<sup>72)</sup>, 지도자 양성과는 專門學校 在學生은 3개월 敎育으로 수료시키고, 新入生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었다.<sup>73)</sup>

梨專은 1945년 4월에 京城女子專門學校로 개편되어 厚生科, 育兒科, 保育專修科, 敎育專修科를 두었는 바, 厚生科와 育兒科는 3년제이고 保育專修科와 敎育專修科는 1년 과정이었다.<sup>74)</sup>

### 5) 京城藥學專門學校

1930년 4월에 3년제 고등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私立 京城藥學專門學校는 日帝 末期에 와서도 제도 면에서 큰 변경 없이 매년 약 100여 명의 學生을 모집하여 약제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1938학년도 學生 모집 때부터 本校의 입학 자격을 ① 中學校 또

64) 고려대학교 70년지편찬실, 전계서, p.192.

65) 연세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 연세대 출판부, 1971, p.396.

66) 상계서, p.420.

67) 상계서, pp.421~426.

68) “告示”, 조선 총독부 판보 제5180호(1944.5.15).

69) 연세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전계서, pp.166~171.

70) 상계서, p.175.

71) 鄭忠良, 梨花八十年史, 梨大出版部, 1967, p.226.

72) 상계서, p.275.

73) 상계서, p.276.

74) 상계서, p.277.

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②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男子), ③ 甲種 實業學校 졸업자 등으로 하였다.<sup>75)</sup>

#### 6) 惠化專門學校

1930년 4월에 인가된 中央佛敎專門學校가 1940년 6월에 惠化專門學校로 개편되었는 바, 學則에 의거한 本校의 제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76)</sup>

##### ① 수업 연한

3년

##### ② 학과

佛敎科, 興亞科

##### ③ 입학 자격

中學校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합격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해 一般專門學校의 입학에 관하여 무시험 검정의 지정을 받은 자

##### ④ 보상·징계·퇴학

학업 성적 우수자, 品行方正者 또는 精勤者는 보상하고, 校則·명령·生徒心得 위반자는 징계하며, 性行不良者·學力劣等者·1년 이상 결석자 및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자는 퇴학

##### ⑤ 別科·研究科

본교에 別科를 두어 別科 졸업자에게 졸업증을 수여하며, 本校의 졸업생을 위해 研究科를 두되 재학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惠化專門學校는 1944년 5월 30일 전시교육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폐교되었다.<sup>77)</sup>

#### 7) 明倫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39년 2월 18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13호로 明倫專門學院 規程을 제정하

고<sup>78)</sup>, 1930년에 經學院에 부치했던 明倫學院을 1939년 4월부터 明倫專門學院으로 개편하여 儒學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本學院에는 本科(3년)와 研究科(2년 이상), 講習科 등의 과정이 설치되고, 정원은 本科 90명, 연구과 20명 등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1942년 3월 25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397호로 明倫專門學校의 설립을 인가하였다.<sup>79)</sup> 이에 따라 明倫專門學院은 1942년 4월부터 私立 明倫專門學校로 개편되었는 바, 本校의 수업 연한은 3년이고, 학생 정원은 150명이었다.

日帝는 1943년 9월에 明倫專門學校를 靑年練成所로 개편함으로써 明倫專門學校는 폐지되었다.<sup>80)</sup>

#### 8)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38년 4월 11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321호로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의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해 5월 1일에 開校하도록 하였는 바, 設立者는 재단 법인 友石學院이었고 수업 연한은 5년(예과 1년, 본과 4년)이었다.<sup>81)</sup>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는 1938년 5월에 豫科生(약 60명)을 모집하였는 바, 입학 자격은 高等女學校 또는 女子高等普通學校 졸업자, 專門學校 입학 자격 檢定試驗 합격자, 4년제 高等女學校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지정받은 자로 하였다.<sup>82)</sup>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1938년 5월에 68명의 豫科生을 모집하여 의학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 바, 豫科의 교과목은 化學·生物學·物理學·數學·日本語·독일어·라틴어·가정·체조 등이었다.<sup>83)</sup>

75)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05호(1938.1.25).

76) 東大七十年史 刊行委員會, 東大七十年史,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pp.307~311.

77) 상계서, p.55.

78) 조선 총독부 관보 제3623호(1939.2.18).

79) 등 제4545호(1942.3.25).

80) 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 成均館大學校史, 成大 出版部, 1978, p.160.

81)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68호(1938.4.11).

82) “豫科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368호(1938.4.11).

83) 高麗大學校 醫科大學校友會 編, 明倫半世紀—高麗醫大 50年史—, 1988, p.31.

本科의 學年別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sup>84)</sup>

· 1 학년 : 해부·生理·生化學(醫化學) 등 기초의학, 조직학, 생태학

· 2 학년 : 病理, 세균(미생물학), 藥理, 위생(공중보건·보건학), 기생충학

· 3 학년 : 임상의학으로 內科學에 2 개과(제 1 내과·제 2 내과), 外科(제 1 외과·제 2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X-Ray 과, 부인과, 정신과

· 4 학년 : 환자 중심의 實習 위주

### 9) 大同工業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李鍾萬이 設立을 신청한 大同工業專門學校(평양)의 設立을 1938년 6월 6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472호로 인가하였다. 그리하여 大同工業專門學校는 1938년 6월 1일자로 設립 인가를 받아 鑛山學科를 두어 鑛山에 관한 工業專門敎育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 바, 大同工業專門學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sup>85)</sup>

#### ① 위치

平安南道 평양부 新陽里

#### ② 設립자

財團法人 大同學院

#### ③ 학과

鑛山學科

#### ④ 수업 연한

3년

#### ⑤ 生徒定員

240명(1학년 80명)

한편, 大同工業專門學校는 1944년 4월에 勅令 제236호에 의거하여 官立 平壤工業專門學校로 개편되었는 바<sup>86)</sup>, 평양공업전문학교는 機械科, 航空機科, 造船科, 金屬工學科 등 4개 과를 두고, 각 과 40명씩 16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소정의 敎育을 실시하였다.<sup>87)</sup>

### 10) 淑明女子專門學校

淑明女子專門學校는 1938년 12월 21일자로 設립 인가를 받고 1939년 3월에 學生을 모집하여 1939년 3월에 開校하였다. 專門學校에 의거하여 新設된 淑明女子專門學校의 제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88)</sup>

#### ① 편제

本科와 專修科

#### ② 設치 학과

家政科, 技藝科

#### ③ 수업 연한

本科 3년, 專修科 1년

#### ④ 입학 자격<sup>89)</sup>

수업 연한 4년 이상의 高等여학교 졸업자, 4년제 高等女學校 졸업자 또는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指定받은 자, 專門學校 입학 자격 檢定試驗 합격자

#### ⑤ 교과목

##### ● 필수 과목

ㄱ. 家政科 : 修身·國語·朝鮮語·漢文·英語·理科·法制經濟·敎育·가사·재봉·技藝·원예·도화·음악·체조

ㄴ. 技藝科 : 수신·국어·조선어·한문·理科·법제경제·敎育·가사·재봉·技藝·원예·도화·음악·체조

ㄷ. 專修科 : 수신·국어·敎育·조선어·한문·가사·재봉·수예·체조

##### ● 선택 과목

ㄱ. 家政科 및 技藝科 : 華道·茶道·음악·도화·영어·주산·타자

ㄴ. 專修科 : 華道·茶道·음악·주산·도화·타자

#### ⑥ 학년·학기

學年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하고, 3학기로 함.

淑明女子專門學校는 1939년 12월에 學則을 개

84) 삼계서, pp.35~43.

85)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14호(1938.6.6).

86)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編纂委員會, 三계서, p.6.

87) 조선 총독부 관보 제5346호(1944.11.29).

88) 淑大三十年史 編纂委員會, 淑大三十年史, 淑明女子大學校, 1968, pp.28~31.

89) “淑明女子專門學校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596호(1939.1.17).

정하여 技藝科를 1·2部로 分科하고, 學期를 2학기로 하며 學科目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sup>90)</sup>

ㄱ. 家政科 : 수신·日本學·法制經濟·教育·國語·理科·家事·재봉·수예·원예·도화·음악·체조·영어(수의)

ㄴ. 技藝科(제 1부) : 수신·日本學·法制經濟·教育·國語·理科·가사·재봉·수예·원예·도화·음악·체조·영어(수의)

ㄷ. 技藝科(제 2부) : 수신·日本學·法制經濟·교육·국어·이과·가사·재봉·수예·원예·도화·음악·체조

ㄹ. 專修科 : 수신·日本學·국어·교육·가사·재봉·수예·직업 및 수공·음악·체조

ㅁ. 선택 과목 : 本科와 專修科 공히 華道·茶道·음악·習字·타자

淑明女子專門學校는 1944년 12월에 學則을 개정하여 物理化學科, 保健科, 被服科와 別科로 教育專修科를 두고, 1년 과정의 女子青年鍊成所 지도원 양성과를 부설하였는 바, 지도원 양성과의 학과목은 國民科, 教育科, 家政科, 職業科, 體鍊科, 藝能科, 修練 및 實習이었다.<sup>91)</sup> \*

90) 淑大三十年史 編纂委員會, 전게서, pp.32~34.

91) 상계서, p.46.